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52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4호, 2023. 12.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1(총칙)의 [별표 1] : 철도차량의 분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	차종	명칭 및 용도
고속 철도 차량	동력집중식 고속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고 객실이 없이 주요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기관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부속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동력객차
		동력집중식 고속철도차량으로 동력원이 없이 순수하게 객실로만 사용되는 고속객차
	동력분산식 고속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동력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없고 동력원이 탑재되지 않는 고속부수차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으로 운전실이 있는 고속제어차로서 동력원의 탑재 여부에 따라 동력제어차, 부수제어차로 구분
일반 철도 차량	디젤전기기관차	동력집중식 차량에서 디젤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철도차량
	전기기관차	동력집중식 차량에서 전기동력원 및 운전장치가 탑재되어 있지만, 여객 또는 화물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철도차량
	디젤동차	동력분산식 차량으로서 디젤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철도차량
	전기동차	동력분산식 차량으로서 전기동력원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철도차량
	객차	일반객차, 침대차, 식당차, 발전차, 기타 객차
	화차	유개화차, 무개화차, 호퍼차, 자갈화차, 탱크차, 컨테이너차, 평판차, 소화물차, 차장차, 벌크시멘트차
	특수차	별표 2에 따른다.
도시 철도 차량	전동차	차체길이 19,500mm 이상, 차체폭 3,120mm 이상,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mm 이상을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초과 16.0톤 이하인 대형전동차
		차체길이 17,500mm 이상 19,500mm 미만, 차체폭 2,750mm 이상 3,120mm 미만, 지붕높이(레일상면 기준) 3,600mm 이하를 가지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6.0톤 이하인 중형전동차
	철제차륜 경전철	철제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고무차륜 경전철	고무차륜형식의 대차를 갖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모노레일 경전철	1개의 궤도거더(track girder 또는 track beam) 위를 고무타이어 또는 철제차륜으로 주행하는 과좌식(straddle type) 또는 현수식(suspended type)의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노면전차	도로에 부설된 궤도 위를 철차차륜으로 주행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분류	차종	명칭 및 용도
	LIM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LIM)를 추진장치로 사용하는 AC 또는 DC 또는 AC/DC 겸용 전동차로서 축중이 13.5톤 이하인 경전철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전자력에 의해 차량을 부상시켜 전자력으로 주행시키는 방식의 철도차량으로서 분포하중[분포하중, 총중량을 해당 차량에 설치된 대차의 전체 길이로 나눈 값의 크기를 말한다]이 미터 당 2.8톤 이하인 경전철

Part 31 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42 객차 기술기준, Part 44 전기동차 기술기준, Part 45 디젤동차 기술기준, Part 46 전기기관차 기술기준, Part 47 디젤전기기관차 기술기준, Part 51 전동차 기술기준, Part 52 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 53 고무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4 모노레일경전철 기술기준, Part 55 철제차륜경전철 기술기준, Part 56 LIM경전철 기술기준 중 3.2.4.5 화재 감지 및 경보 2)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Part 57 도시형자기부상경전철 기술기준 중 3.2.3.5 화재 감지 및 경보 2) (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Part 41 일반철도차량 기술기준 중 5.4.15 주행안전성시험 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적용범위

해당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에 대한 설계적합성 또는 형식동등성을 시험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차량 형식시험은 최초 개발된 철도차량 또는 새로 설계된 주행장치를 포함하는 철도차량에 대해 직접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하고(단, 축중 225kN, 최고속도 120km/h 이하인 특수차의 경우 차량 형식시험은 단순화 방법을 적용), 이미 개발된 차량 중 주행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화 방법을 적용한다. 차량주행시험은 단순화 방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23조제6항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분류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철도차량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일반철도차량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주행안전성 시험방법을 다른 차종과의 일관성과 특수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